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노1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하은(기소), 김성동(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산들 담당변호사 김윤영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고단155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3,819,425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게임콘텐츠의 개발과 육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약 2년간 이 사건 사설서버를 운영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공탁금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4. 추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수익금에 대한 거래내역 검토 및 수익금 최종산정)]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현우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30

판사 신서영 _____

판사 남윤표 _____